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5981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원고, 피항소인 A
대구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항소인 B청과 주식회사
대구 북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20643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대구 북구 매천로00길 00 (매천동) 피고의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9. 2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3. 18. 퇴임한바 있고, 2015. 2.경 기준 피고의 총발행주식 210,000주 중 38,086주(18.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3)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E의 형으로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의 거래방식

피고의 주된 사업은 농산물 수탁판매인데, 그 방법은 생산자(출하주)로부터 출하받은 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당일에 판매대금을 생산자(출하주)에게 선지급한 다음, 피고가 정한 마감기일까지 중도매인으로부터 물품대금(미수금)을 정산받는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 경고처분 등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5조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주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주 손실보전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주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제3항), ‘손실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¹⁾.

2) 대구광역시는 2012.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55조에 근거하여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가 출하주 손실보전금을 당해년도 순자산액에서 적립한 것’에 관하여 ‘전년도 이익잉여금에서 당해년도 지급예정액을 1월에 확보하고 개설자에게 보고토록 개선’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위 조치명령 등에 의하면 피고는 직전년도 당기순이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전금의 예산 범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례에 따른 2012년도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 6억 7,700만 원을 초과한 10억 9,8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출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2.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급조치명령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1) 위 출하주 손실보전금은, 경매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도매시장법인인 피고 회사가 출하주(농민)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돈을 뜻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등

1)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 2013. 3. 18.자 정기주주총회(제20기) 의사록 및 의안사항(2012년도 결산 승인, 2013년도 예산안 승인, 이사.감사 변경, 정관 변경), 주주명부 등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로서 총회에 직접 참여하였다거나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 위 요청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를 거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이사 D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B물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손실보전금 과다지출 등 의혹을 품고 피고의 손실보전금 지출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의 회계장부열람 협조요청 등을 두 차례나 하였으나, 또다시 피고는 2013. 10. 28.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악의적 사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중도매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에 따른 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출하주 손실보전금 과다지출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위반 여부, 부실채권 증가 및 법인세 미납 등 분식회계의 의혹, 회계처리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은 회계장부 등(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을 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1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

1) 상법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 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 137 판결 참조), 이때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은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그 서류로서 소수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원고가 2013. 3.경까지 약 10년간 피고의 감사로 재직해 오다가 해임되자 그의 주식지분 38,086주(18.14%)를 피고의 대표이사 C의 형인 대주주이자 이사인 D 등에게 고가로 매각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만으로도 출하

주 및 중도매인 거래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출하주와 중도매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악용할 목적으로 그것이 기재된 출하주별 출하실적 관리카드 내지 손실보전금 지급명세서와 중도매인별 담보현황 내지 영업활동현황,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및 거래약정서까지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출하주 손실보전금 및 중도매인들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각 지급 정도와 피고와 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계약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피고와 중도매인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영업 비밀이 경쟁법인 또는 경쟁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 등에게 유출될 경우 피고와 중도매인은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라) 출하주별 손실보전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로 C, D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영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약 10년간 재직하였는데 퇴임할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와 대주주 D 등을 상대로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나 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을 제1 내지 12, 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주식지분 38,086주(18.14%)를 대주주인 D 등에게 고가로 매각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하주와 중도매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피고 회사와 중도매인의 영업상 비밀을 타에 유출, 악용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채 부당하게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1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로서 피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실효적인 경영감독과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사업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주주 및 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의 확인,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 관리현황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액 확인,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의 확인, 손익계산서상의 불일치 금액 확인 및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 검토, 피고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 범위 및 횡령 및 배임 행위의 계속 여부의 확인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는 정당한 목적 아래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실효적인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열람범위나 시기 또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2. 1.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2012년도 지출 한도보다 약 4억 2,100만 원을 초과한 손실보전금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4.경 위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급조치명령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피고의 2012년 및 2013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상 계산되는 당기순이익'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711,704,190원	930,637,626원
재무상태표 당기순이익 (=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464,378,020원 (= 2,247,112,952원 - 1,782,734,932원)	596,221,444원 (= 2,843,334,396원 - 2,247,112,952원)

다) 위 나)항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원고의 지적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차이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금²⁾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는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이 아니고 단순한 표시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2012년도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 464,378,020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로서 전기오류수정손실금으로 반영한 115,326,170원과 이월이익잉여금 132,000,000원을 더한 돈 711,704,190원(= 464,378,020원 + 115,326,170원 + 132,000,000원)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고, 2013년도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 596,221,444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로서 전기오류수정손실금으로 반영한 334,416,182원을 더한 돈 930,637,626원(= 596,221,444원 + 334,416,182원)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2012. 1. 4.경 피고에게 출하주 손실보전금을 전년도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고 명령하자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손실보전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회계연도별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차감후 당기순이익 및 피고의 전년도 결산 대비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전비 예산 책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대구광역시의 위 2012. 1. 4.경 조치명령 등에 의하면,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출범위는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정하여져야 하고 실제로도 피고의 2014, 2015년도 출하주 손실보전비의 예산액은 손익계산서상 전년도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2, 2013년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손실금으로 반영한 법인세를 2014, 2015년도처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의 계정에 반영하였다면 그 법인세 비용만큼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줄어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손실보전금 예산 범위를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2, 2013년도에 법인세를 전기오류수정손실금으로 반영한 피고의 회계처리방법이 2013, 2014년도 출하주 손실보전금의 예산 범위(한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의심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법인세 차감전 이익	711	930	429	973

2)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용어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손실항목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법인세등	0	0	212	179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711	930	217	794
당해년도 손실보전금 예산내역	677	909	930	217

라) 한편, 피고의 회계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예산서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도 출하주 손실보전금 과다 집행으로 2013. 2.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출하촉진비(출하주, 기사 식대 및 명절 선물비, 출하주 및 중도매인 과일.찬조금, 출하주 하역비.운임지원, 우수출하단체 물품지원 등의 지출항목)로 당해년도 책정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액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2억 원가량 증가(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는데 출하주 손실보전금 집행액은 전년도 8억 1,1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반면 출하촉진비 집행액은 6억 4,900만 원에서 13억 9,500만 원으로 대폭 증가(전년 대비 약 215%)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는 출하촉진비는 손실보전비와 성격이 다른 돈으로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출하촉진비의 예산 초과 집행액이 실제로 적정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출하주 손실보전금 집행액의 감소와 출하촉진비의 집행액의 증가 사이에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의심하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8,268	8,069	7,606	8,814
손실보전금 집행액		1,098	599	811	185
출 하 촉 진 비	예산액	379	419	467	1,190
	집행액	401	675	649	1,395
	초과집행	22	256	182	205

마) 피고는 출하주에게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조례 제20조³⁾와 피고와 중도매인간 일반적인 거래약정서(갑 제3호증) 규정⁴⁾ 등에 따라 피고는 중도매인이 제공한 보증금과 담보물 가액의 한도 내에서 외상거

3) 조례 제20조

제1항 중도매인은 업무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피고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중도매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1. 12. 31.경 당시 피고와 거래하는 중도매인 중 (주)부용유통(F), (주)영○청과(G), 계○상회(H), 매매참가인 I, 청○상회(J), 밀○상회(K) 등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탁판매 미수금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담보설정액을 상당한 정도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5. 31. 현재에도 상당한 외상잔액이 남아 있고, (주)영○청과(G), 계○상회(H), 매매참가인 I, 청○상회(J), 밀○상회(K)에 대한 부분에 관한 담보는 여전히 없거나 미수금 채권보다 적은 상태이다.

(단위:천원)

순번	상호	성명	2008. 12. 31. 확인		2011. 12. 31. 확인		2016. 5. 31. 피고 주장(을21)	
			담보	외상잔액	담보	외상잔액	담보	외상잔액
1	(주)부○유통	F	105,000	112,529	235,000	641,872	440,000	397,368
2	(주)영○청과	G	47,000	41,000	167,000	356,931	-	230,548
3	계○상회	H	41,000	50,335	111,000	219,229	20,000	28,744
4	매매참가인	I	-	-	-	117,682	-	59,675
5	청○상회	J	140,000	313,255	140,000	573,339	350,000	587,245
6	밀○상회	K	51,000	31,062	51,000	205,674	25,000	166,240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실효적인 경영감독 등을 위하여 위 업체들을 포함한 중도매인에 대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수금 채권의 관리상황과 부실채권 발생 여부를 이 사건 회계장부

4)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제4조(보증금) 중도매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금 _____ 원정)

제5조(외상거래 및 담보제공 한도액)

①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제4조의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의 재정상태, 담보제공상태, 영업활동실적, 미수금 납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과 협의하여 외상거래 한도액을 조정한다. (일금 _____ 원정)

② 중도매인이 제4조의 거래 보증금을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매인은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질권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담보의 변경)

① 중도매인이 피고에게 납입할 물품대금을 마감일까지 정산을 하지 못하여 1개월 이상 연체되어 피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도매인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대금의 정산)

중도매인은 피고로부터 경락받은 물품대금은 즉시로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가 정한 마감일까지는 완전 정산하여야 한다(단, 부류별로 마감일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미수금)

피고와 중도매인간에 농산물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시에는 중도매인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미수금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중지/약정해지)

① 중도매인에게 다른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거래중지 또는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금액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담보제공 등 피고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와 중도매인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중도매인이 물품대금을 피고가 정한 마감일까지 입금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감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마)항에서와 같이 미수금을 완납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하며, 그 경영판단이 합당한 것인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 산정 내역과 지급 내역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주로서 제기하는 위와 같은 의심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가 비록 피고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을 통해 피고의 재무상태나 영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기재 및 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그 기재의 토대가 된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 내지 손실보전금지급명세서와 중도매인별 담보현황 내지 영업활동현황,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및 거래약정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 위사)항과 같은 서류들에 출하주 및 중도매인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그에 대한 암호화 등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제16조, 제24조, 제24조의2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출하주 및 중도매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출하주 손실보전금 및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각 지급 정도와 피고와 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계약에 정해진 거래조건 등이 피고와 중도매인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로 인해 피고의 영업비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를 경쟁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반면, 만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고가 원하는 위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8.14%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사실상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감독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의 대표이사 C과 그 형인 대주주이자 이사 D은 출하주별 손실보전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로 D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정 2598호 유죄판결, 같은 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668호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된 바 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① C과 D은 공모하여 C 등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 2천만 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② D이 위암 발병에 따른 수술비 등이 필요하자, C과 D은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D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D에게 85,290,870원 상당의 퇴직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으며, ③ 대표이사 C과 이사 D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이들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D은 공모하여 보수의 인상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하여는 2011년도 임금액 18,290,000원 및 2012년도 임금액 22,250,000원을, C에 대하여는 2011년도 임금액 20,160,000원 및 2012년도 임금액 29,190,000원을 각 인상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위 임금 인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C과 D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위 범죄들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형사판결의 확정일인 2015. 1. 16. 전까지 피고 회사 경영진의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의심하며 위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 범위, 횡령 및 배임 행위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열람.등사의 방법과 범위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그러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여, 그 이행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로 정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회계장부열람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적 사용이 예상된다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명할 적정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에게 위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영진
	판사	남기정

별지

서류 및 장부의 표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
2.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
3. 중도매인 영업활동 현황
4. 출하주별 손실보전금지급명세서
5.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6. 중도매인별 거래약정서
7. 급여대장
8.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9. 피고 법인 명의 예금통장사본
10. 중도매인 담보 현황. 끝.